

2. 住宅關聯 規制緩和 措置

— 再當籤制限 緩和 —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

■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,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신규주택의 재당첨제한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음

■ 완화내용

— 현재는 주택을 한번 분양받게 되면 국민주택의 경우는 10년간 민영주택의 경우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으나

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하여, 국민주택은 5년, 민영주택은 3년간으로 각각 단축키로 하였음

※'97년 상반기중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규정·시행

■ 완화배경

—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청약관련예금가입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등 초과수요가 상당히 해소되었고, 소득증가 등에 따라 주거생활의 상향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으나

— 과거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던 시대에, 한 번 당첨된 사람들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재당첨제한 제도로 인해 주거선택의 범위가 제한되고 안정적인 수요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.

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수요확보를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을 도모하기 위해, 재당첨제도의 실익이 적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임

※재당첨제한 제도 추진경위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)

- 78. 5 (주택공급규칙 제정시) : 국민·민영주택 각 3년간 제한
- 83. 4 국민주택을 5년으로 연장(민영주택은 3년 유지)
- 84. 11 국민주택 10년, 민영주택 5년으로 연장

※수도권지역은 청약저축·예금가입자가 167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대기수요가 많으므로 제외

주택회보